

일반위탁부모의 위탁유지 의사에 관한 탐색적 연구

：H위탁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Decisions among Foster Parents to Continue Foster Care

：The Case of "H" Foster Care Agency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우*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 Kim, Jung-Woo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what kind of intervention might help foster parents decide to continue engaging in foster care. As foster care services are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development, lacking systematic support systems as well as full understanding of the roles of foster parents and foster care agencies, it is important to recruit, select, and train as many foster parents as possible. Utilizing the Foster Parent Role Perception scale developed by Le Prohn, the author first conceptualized foster parent roles or foster care agency roles; then explored what kind of effects the resource level or the role perception of the foster parents have on the decisions to continue doing foster ca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oster parents perceived "supporting the internal system of the foster child" and "supporting the external system of the foster child" as the roles of foster parents, whereas "fortifying the foster care system" and "maintaining liaison with birth parents" were the roles of foster care agencies. It was also found that foster parents' strong role perception, higher levels of satisfaction towards education on the part of foster parents, and the number of children from the previous marriag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decisions to continue foster care. The author argues that clear definitions of roles are needed for both foster parents and foster care agencies. Finally, the role of foster care agencies needs to be strengthened and supported.

▲주요어(Key Words) : 위탁보호(foster care), 위탁부모(foster parents), 위탁유지(foster care retention)

I.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IMF시기 이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구체화해 왔다. 그러나 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실업문제는 가정불화, 이혼, 아동학대 등 사회 병리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의 수를 더욱 증가시켜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¹⁾. 가정

위탁제도는 부모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동을 직접 양육 할 수 없을 때, 혹은 그 양육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가정을 선정하여 아동이 올바르게 기능하는 성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 전문적인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아동

아동의 수는 전국적으로 약 9,393명이며 이들을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기아 481명, 미혼모아동 4,004명, 미아62명, 비행, 가출 등 581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빈곤, 실직, 학대 등에 의한 요보호 아동의 발생은 4,263명으로 나타났다.

* 주 저 자 : 김정우 (E-mail : jwkim@skku.edu)

1) 보건복지부 통계연보(2004)에 의하면 2004년 현재 요보호

보호의 대안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Testa & Rolock, 1999; Barth 외, 1994) 우리나라로도 1999년 가정위탁제도의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된 이후 실무를 지원하는 가정위탁보호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등 시설보호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점차 가정위탁보호제도의 비중이 더 증가한다고 하겠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 위탁보호의 총량을 증가시키고 보호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적절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효과적인 가정위탁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위탁아동, 위탁부모, 친부모, 위탁보호를 지원(support)하는 기관 등 4주체가 유기적인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한국수양부모협회, 2004). 그러므로 이 구성원 중 일부에서 위탁보호를 지속하기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경우 아동의 재배치는 물론이고 위탁부모가 더 이상 위탁부모로서의 자격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이는 현재 위탁하는 아동은 물론이고 향후 다른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도 포기하게 됨을 의미)도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성과(outcomes)를 산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나 이들 중에서도 위탁부모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아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효과적인 위탁보호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주체들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

그러나 이처럼 위탁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위탁보호제도 자체의 정교함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에 관한 실천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위탁보호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위탁부모의 특성에 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위탁부모를 모집, 선발, 교육하는데 필요한 지침 및 이론의 체계화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탁부모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바이며, 그 중에서도 위탁부모들이 지속적으로 보호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실천현장에 필요한 경험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특히 여러 유형의 위탁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²⁾들 중에서도 모집, 선발, 교육 및 위탁의 유지가 더

2) 가정위탁보호는 가정에서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양육될 수 없는 아동에게 계획된 기간 동안 주어지는 대리가정에 의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총칭이다 (장인협, 오정수, 2000). 이를 위탁부모의 유형에 따라 구분할 경우 부모를 제외한 부양 의무자에 의한 보호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조모나 조부에 의한 것이 대다수 임)를 대리양육가정이라고 하며,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한 보호를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인에 의한 보호를 일반위탁가정으로 구분한다. 특히, 일반가정위탁의 경우 위탁아동으로 선정되기 위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일반위탁가정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자발적 동기를 가진 위탁부모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1. 위탁유지(retention)의 개념 및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위탁보호의 성과지표로서 '위탁부모의 위탁유지의사(intent to retention)'를 개념화 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위탁유지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혼용되어 사용되었는데 ① Friedman(1980) 등은 위탁기관에 의해서 위탁부모로 모집된 후 실제로 위탁부모가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면서 위탁유지(reten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② Pasztor (1985)은 위탁부모 교육을 받는 동안 자의적으로 중도 탈락하지 않는 경우를 위탁유지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③ 위탁기관에 의해 위탁부모로 선발된 이후 알코올 중독이나 전과기록과 같은 위탁부모의 자격조건의 미달로 기관에 의해 탈락되는 경우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④ 마지막으로 R. Denby(1999)등의 연구에서는 위탁보호에 대한 자격을 가진 부모 809명을 대상으로(조사 당시 아동을 위탁하고 있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앞으로 약 1년 정도 위탁가정으로 남아 있을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위탁유지의사를 조사한 바 있다.

즉, 정리하자면 선행연구에서 위탁유지(retention)란 위탁부모로 모집되어 교육 받는 기간을 포함하여 아동을 실제로 위탁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중도포기하지 않을 의사를 의미함과 동시에, 위탁에 대한 경험이 있지만 조사 당시 아동을 위탁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부모로서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의 표시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탁부모들이 위탁보호를 중단하거나 위탁부모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는 문제가 본 연구주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위탁가정 내부에 발생한 자체적인 스트레스 상황이나 변화가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위탁부모에게 제공되는 사

해서는 연령이 15세 미만 이어야 하며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으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경우 부모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로 위탁부모들이 갖는 경제적 부양부담은 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회복지서비스(위탁기관에서 제공되는)의 빈도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 혹은 위탁보호에 대해 현실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Baring-Gould et. al., 1983). 이 밖에 위탁부모의 인구학적인 특성이나(Downs, 1986), 경제적인 인센티브 또한 이들의 위탁유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Campbell & Downs, 1987, Chamberlain et. al., 1992; Himle et. al., 1991). 그리고 유사한 개념으로 위탁보호의 지속성(continuation)은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위탁부모의 만족감(satisfaction)과 지속의지(intent to continue)에 달려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Denby, R et. al., 1999).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는 위탁유지에 대해 국내의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김정우(2006, 발간예정)는 위탁부모들의 개인적 특성과 역할인식의 특성에 관해 탐색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이들간의 영향력 등을 파악하지는 못했으며, 양심영(2003), 허남순(2004) 등에 의해서 위탁보호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이는 위탁보호의 유형 차이에 따라 아동의 특성이나 적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것으로 위탁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김진숙, 이근무(2005)의 연구가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로 '양육계약해지'를 다루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양육계약해지'란 기한 도래 전에 양육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 이미 위탁보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조사일 현재 아동을 위탁하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계속해서 위탁부모자격을 유지하면서 향후 다시 위탁부모가 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위탁유지의사'에 관한 연구와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부족한 관련 연구 경향과 체계화되지 않은 위탁유지의 개념으로 인해 탐색적으로 이를 한국의 상황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으며, '앞으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새로운 아동을 위탁할 의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이를 파악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위탁부모들의 모집이나 선발이 활발하지 않아 위에서 제시한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④의 경우를 참조하여 최종 종속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는 또한 현재 위탁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위탁을 중도 포기한 경우에도 이들이 위탁부모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면 그 위탁유지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위탁부모의 위탁유지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자원이론과 위탁부모의 특성

자원이론(Theory of Resources)은 사회교환이론에서 출발하여 초기에는 주로 개인간 관계 (interpersonal relationship)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가족구성원 내에서의 의사결정에 자원이론의 적용을 가능성을 처음 소개한 것은 Blood & Wolfe(1960)이다. 그들은 특정 의사 결정에 미치는 힘은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할 수 있고, 의사결정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특히 자원을 더 많이 가질수록 의사결정에 미치는 가족 구성원의 힘이나 영향력은 더 커진다고 하였다(강석후, 2001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Hesse-Biber(1984) 등은 자원을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어떤 것'이라고 정의 하였으며, Foa(1974) 등은 이러한 자원에는 6가지 차원이 있는데 사랑(love), 봉사(service), 재화(goods), 돈(money), 정보(information), 지위(status) 등(Cox et. al., 2002에서 재인용)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가족의 자원을 위탁보호와 관련하여 설명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는데 Rhodes(2003) 등은 위탁유지(retention)의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들로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 높은 소득수준, 결혼상태, 위탁을 위한 시간적 여유, 아이를 키워본 경험, 신앙심, 사회적 지원(support), 원조전문직(예를 들어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 종사하는지 여부, 특정 인종(European American)에 속할 것 등을 꼽은 바 있으며 이것들을 모두 위탁부모의 자원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즉, 위탁부모의 자원은 물리적으로 위탁부모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특성 외에 인적자원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족 중에서 이러한 자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기 위탁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위탁유지의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위탁보호를 수행하고 있는 부모들은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에 있어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정우, 2006, 발간예정).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특성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으며 다만 이들 변수들이 위탁유지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 따라 이들 변수를 간략히 제시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탁부모의 자원으로 위탁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변수를 활용하고자 하며, 위탁부모의 재산(소득)과 관련해서는 월평균 가구소득과 주택소유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들에 대한 탐색적 정보를 제공하

는 차원에서 위탁활동 현황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추가하였다.

2) 역할이론(Role Theory)과 위탁부모의 역할 인식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역할의 개념은 '상호작용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수행하는 학습된 행동이나 행위의 정형화된 연속'을 의미하며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는 상대방의 호혜적 기능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지는 것이다(Liane, 1996).

위탁보호에 있어서 위탁부모의 역할은 개인이 이해하고 인지하는 역할에서부터 출발하여 상호 연관된 역할들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개인과의 관련 업무들을 통해서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며, 문제는 이 역할에 대한 기대감들이 서로 다를 때, 애매모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Beehr, 1995).

가정위탁제도와 관련된 외국의 문헌들에 의하면, 위탁부모의 역할책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의 위탁경험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한다(Fees et al., 1998; Pasztor, 1985; Simon & Simon, 1982). 또한 위탁부모들이 실제로 위탁 보호를 경험할수록 사전에 포기하는 확률이 낮아진다(Chamberlain, Moreland, & Reid, 1992; Boyd & Remy, 1979). 반대로 위탁부모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전문가들은 새로운 위탁가정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Rodwell & Biggerstaff, 1993; GAO, 1989). 또한 위탁부모들이 사회복지기관의 정책이나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가정위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진다는 보고도 있다(Pasztor, 1985; Campbell & Downs, 1989; Pasztor & Wynne, 1995; Rindfuss, Bean, & Denby, 1998). 특히, 위탁부모들이 모집과정과 교육·훈련과정에서 얻는 정보와 실제 위탁아동을 맡아 관여하는 서비스계획상의 의사결정과정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는 위탁부모들의 역할수행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Pasztor, 1985).

즉, 위의 선행연구에서 보는 것처럼 위탁보호에 있어 명확한 역할인식 및 규정은 위탁부모들이 위탁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각 위탁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나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위탁부모의 역할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수행된 바 있는데(김정우, 2006, 발간예정), 이에 따르면 위탁부모들은 위탁보호에 필요한 여러 역할들 중에서 아동의 심리적 적응, 행동적 적응, 아동의 의료적 문제에 대한 개입은 부모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아동의 친부모

나 친가족과의 만남, 위탁보호서비스 자체의 활성화 등은 부모의 역할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조사대상자들의 응답결과를 평균을 기준으로 서열화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개념적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탁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념화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할 것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 역할들이 최종적으로 위탁부모의 위탁유지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위탁부모의 위탁유지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위탁부모들의 자원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위탁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셋째, 위탁부모들의 자원수준과, 그들의 부모역할 인식은 위탁유지 (retention)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H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위탁부모 신청자 중 1회 이상 아동 위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서울·경기, 대구 지역의 위탁부모 총 1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관의 협조를 얻어 위탁부모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이 때 연구목적을 소개하고 조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했다. 사전 동의를 구한 126명에 대해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2004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2달간 회수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자기 보고식 설문 방법이었는데 최종 72부가 회수되었으나, 누락된 문항이 많은 설문지 1부를 제외하고 71부(56.4%)의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활용하였다.

전국에서 조사대상을 설정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위탁보호제도의 전달체계와 관련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17개의 가정위탁보호지원센터가 있으나 이 중 3개의 지원센터와 중앙센터는 'H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K 재단' 소속이다. 이를 운영기관에 따라서 위탁부모들이 지급받는 경제적 지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탁부모의 물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였고, 기관들의 조사 내용이 기관간 평가로 비추어 질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1개 기관만을 조사하는 것이 더 타당할 뿐 아니라 동질적인 연구대상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때문이다.

3. 자료 분석 및 조사도구

먼저 위탁부모들의 자원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SPSS 12.0을 이용하여 기본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들의 역할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르프론(Le Prohn, 1993, 1994)이 개발한 FPRP(Foster Parent Role Perception)척도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위탁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위탁부모의 자원수준과 역할인식이 위탁부모의 위탁유지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FPRP(Foster Parent Role Perception) 척도는 위탁부모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작된 자기 보고형 척도로서 위탁보호와 관련하여 위탁부모가 담당할 수 있는 총 40개의 역할로 구성되었으며, 각 총점의 범위는 40점에서 200점까지이다. 각 항목에 제시된 위탁부모의 역할에 관하여 본인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정도를 '할 필요가 없다'부터 '반드시 해야 한다'의 5점 척도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르프론은 최초에 위탁부모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통해서 총 40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이 척도를 82명의 친인척과 98명의 친인척이 아닌 위탁부모들(일반위탁부모)의 표본을 통해 평가하였다. 주성분분석(직각회전)을 실시한 르프론은 ①친부모관련 요인 (8항목, $\alpha = .89$); ②사회 정서적 지원요인 (10항목, $\alpha = .81$); ③기관파트너 요인 (6항목, $\alpha = .88$); ④부모역할 요인 (9항목, $\alpha = .77$); ⑤영적 요인 (3항목, $\alpha = .60$)등의 역할을 분류해 내고 관련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를 제시하였다(나머지 4항목은 위의 요인들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되었다)³⁾.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537$ 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적타당도 검증을 위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회복지학전공 박사과정 학생1인과 사회복지학전공 교수1인의 의견을 확인한 바 있다.

3) 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친인척 위탁부모들이 일반위탁부모들보다 아동에 대한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동의 친부모 관련 행동에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ang, 2003).

IV. 조사결과

1. 위탁부모의 자원수준

전체 위탁가정은 71개이며 <표 1>에서는 조사대상의 위탁부와 위탁모를 구분하여 각각 그 특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위탁부와 위탁모 모두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교육수준은 대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2006, 발간예정)에 의하면 일반위탁가정의 부모들은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동일연령대의 일반인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는 도시가구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를 차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매우 동질적 집단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에서 위탁부모의 중요한 자원으로 꼽혔던 혼인상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5가지 범주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는데 특이할 만한 사실은 기혼이면서 전처나 전남편의 자녀가 있는 계부모가정이 약 14%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국내의 위탁보호 관련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족구성이 갖는 의미나 현황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이것이 전체 위탁 동기나 아동의 특성 및 위탁유지 의사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후속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는 위탁부모의 혼인상태를 미혼부와 미혼모까지를 포함하며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 부부로 구성된 가정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연구대상이 되는 'H위탁기관'에서는 부부를 위탁부모의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들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월 평균 가구소득'과 '주거유형'을 조사하였다. 전체의 약 70% 이상이 가구소득 2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3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거유형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62%였다.

<표 2>에 의하면 위탁부모들의 위탁보호 현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은 조사일 현재 평균 약 1.08명의 아동을 위탁하고 있었으며, 위탁부모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아동을 위탁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금까지 위탁한 총 아동수는 평균 2.32명이며 3명 이상을 위탁보호 한 경우도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총 위탁아동수의 경우 최소값 1, 최대값이 11로 극단값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통계치

항목	문항내용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위탁부 연령	30세 이상 - 39세 미만	7	9.9	47.49	5.52
	40세 이상 - 49세 미만	39	54.9		
	50세 이상 - 59세 미만	23	32.4		
	60세 이상	2	2.8		
위탁부 교육수준	초졸	1	1.4	15.94	2.08
	중졸	0	0		
	고졸	8	11.3		
	대졸	43	60.6		
	대학원졸	19	26.8		
위탁모연령	30세 이상 - 39세 미만	16	22.5	44.26	5.49
	40세 이상 - 49세 미만	42	59.2		
	50세 이상 - 59세 미만	13	18.3		
위탁모 교육수준	초졸	0	0	14.44	2.20
	중졸	1	1.4		
	고졸	27	38.0		
	대졸	38	53.5		
	대학원졸	5	7.0		
혼인상태	기혼 (전처나 전남편의 자녀가 없음)	53	74.6		
	기혼 (전처나 전남편의 자녀가 있음)	10	14.1		
	동거	1	1.4		
	사별	1	1.4		
	기타	6	8.5		
가구 총 소득	100만원 미만	5	7.6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5	21.1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2	40.0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	22.6		
	400만원 이상	13	16.3		
주거유형 (n=67)	자가	44	62.0		
	전세	11	15.5		
	월세	3	4.2		
	기타	9	12.7		

<표 2> 위탁보호 현황에 대한 기술 통계치

항목	문항내용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현재 위탁아동수	0명	21	29.6	1.08	.025
	1명	33	46.5		
	2명	10	14.1		
	3명	4	5.6		
	4명이상	3	4.2		
총 위탁아동수	1명	32	45.1	2.32	.926
	2명	18	25.4		
	3명	8	11.3		
	4명이상	13	18.3		
위탁교육만족여부	만족하지 않음	14	19.7		
	만족 함	57	80.3		
위탁유지의사	없음	26	36.6		
	있음	45	63.4		

이 외에도 이론적 배경에 의하면 위탁부모가 위탁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가 이들의 위탁유지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탁부모들이 받고 있는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전체의 약 80%가량이 위탁교육에 만족하고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2. 위탁부모의 역할인식

위탁부모의 역할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FPRP 척도를 이용한 조사내용에 대해 요인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첫째, 연구자가 르프론의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역할”요인과 “영적”요인에 관한 제한적 신뢰도결과에 대하여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으며 둘째, 원래 르프론이 척도를 개발할 때 사용했던 주성분분석이 사회현상이나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es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여 좀 더 명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요인구조를 발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Gorsuch, 1983). 셋째, 연구에서 사용된 FPRP 척도는 위탁보호 경험에 있는 부모들과 위탁보호에 전혀 경험이 없는 부모들을 동시에 조사하여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은 모두 위탁보호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다소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법론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한계점도 분명 존재하는데, Gorsuch(1983)는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1개 문항당 적어도 관찰수효가 최소 5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유효한 전체 조사대상이 71사례로 40문항의 척도를 사용해 요인분석을 하기에는 문항대비 사례수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요인분석을 시도한 이유는 국내에서 위탁부모의 특성 및 역할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위탁부모들을 대상으로 양적 조사 자료를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보호의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의 경험적 자료로서의 회소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자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KMO와 Bartlett검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KMO의 값이 .778이었고 Bartlett의 구형도 검증 결과 유의 확률이 .001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여 요인분석이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프론의 연구에서는 40문항을 모두 위탁부모의 역할로 전제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의 문항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검토하고 해석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위탁부모의 역할 요인과 위탁 기관 관련의 역할 요인으로 구분하

였다. 그런 다음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위탁부모역할과 위탁기관역할의 내부 구조를 탐색적으로 파악하였다. 이 때 사용된 요인구조의 회전방식으로는 사각회전(oblimin)방식을 채택하였다.

1) 위탁부모가 인식하는 부모역할

(1) 위탁부모의 역할 1: 아동의 외적 체계에 대한 지원

요인분석을 통해 위탁부모의 역할을 구분한 결과 첫 번째 역할은 <표 3>과 같이 ‘아동의 외적체계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Heptinstall 등(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위탁아동에게 중요한 타인으로 인식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가능하다. ‘아동의 외적 체계에 대한 지원’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포함하는데 ① 의사, 교사, 상담가 등 관련 전문가와의 협조, ②아동에게 친부모와의 적절한 관계를 교육시키기, ③친구 및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 지원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④가사일을 비롯한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이 주요한 위탁부모의 역할로 나타났다. 르프론은 이상의 내용들을 ‘부모역할요인’으로 명명한 바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위탁부모가 아동의 외적 체계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중요한 것이 관련 전문가와의 협조인데 Brown (2005)등은 특정한 문제가 있는 아동을 위탁할 때 필요한 부모의 욕구(needs)에 관해 조사하면서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물질적인 필요(materials)와 함께 전문가(professionals)를 꼽은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란 ‘협력할 수 있는 전문가’, ‘건강관련 전문가’, ‘전문가로 부터의 조언’, ‘어떤 지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 ‘장애관련 전문가’, ‘학교와의 의사소통’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즉, 위탁부모는 아동을 더 잘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관련전문가들과 협조해야 하며, 실제로 조사대상인 위탁부모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구체적인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위탁부모의 역할 2: 아동의 내적 체계에 대한 지원

위탁부모의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아동의 내적 체계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①아동의 정서적 성숙, ②자존감 향상, ③외로움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이 포함되었고 이 내용은 르프론이 명명한 ‘사회 정서적 지원요인’과 많은 부분 일치하였다. 이 중에서 7번 문항을 제외한 3개의 문항은 평균이 4점 이상으로 나타나 위탁부모들이 아동의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탁아동들의 심리, 정서적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에 의하면 아동들은 위탁되면서 보통 다음의 3가지 감정을 경험한다

<표 3> 위탁부모들이 인식하는 위탁부모의 역할

		문 항	요인1	요인2	공통성
역할1: 아동 외적체계 지원	문항37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선생님과 협조한다.	.822		.736
	문항24	시간이나 일정을 조정해 때에 맞춰서 아이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783		.716
	문항19	십대 청소년인 경우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해 아이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772		.705
	문항35	아이를 효과적으로 교육시키는 방법에 대해 모색해 본다.	.767		.654
	문항40	아이가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대비해 준다.	.730		.770
	문항21	친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에 아이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727		.732
	문항32	평소에 위탁아동들이 자신의 친부모나 형제들과 어떻게 지내야하는지에 관해 설명 해주고 가르쳐준다.	.691		.583
	문항28	아이가 자라서 독립을 원할 때 살 집을 함께 알아본다.	.682		.614
	문항34	아이의 성장과정에 대해 상담선생님이나 전문의와 상의한다.	.676		.577
	문항33	아이의 의료기록을 보관한다.	.672		.796
	문항23	아이의 학교생활기록을 보관한다.	.666		.734
	문항14	학교에서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처한다.	.634		.734
	문항38	십대 청소년인 아이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가사일이나 여러 집안일을 가르친다.	.627		.689
	문항04	위탁아동이 정서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904 .635
역할2: 아동 내적 체계 지원	문항03	위탁아동에게 자존감을 심어준다.			-.839 .559
	문항02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도와준다.			-.832 .609
	문항07	십대 청소년인 위탁아동이 스스로 독립해 살아갈 때를 대비해서 외로움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처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695 .545
	신뢰도		.9289	.8909	
설명된 총 분산					61.77%

(Whiting et. al., 2003). 먼저 자신이 왜 위탁되게 되었는지,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움(confusion)을 경험하며 다음으로 상실감(loss), 두려움(fear), 분노감(anger)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이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대상은 친부모, 형제, 친척, 위탁가정, 친구, 전문가 등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결국 위탁아동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문제와 이러한 문제의 표출 및 개입에 관해 위탁부모들이 경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자신의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내외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허남순, 2004; 양심영, 2003; Brown, 2005).

정리하자면 위탁부모들이 인식하는 중요한 역할은 첫째, 아동에게 중요한 타자들과의 관계 중심에서 필요한 중재, 상담, 의사소통, 교육 등이며 둘째, 위탁아동의 특성상 이들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전체적인 위탁보호의 체계내에서 중요하게 수행되어야 할 역할들 중 위탁부모들이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역할들은 누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가 위탁부모의 역할인식과 이것이 위탁유지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로 자칫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역할들 역시 위탁부모들이 다른 주체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개념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위탁부모들이 인식하는 위탁기관의 역할

위탁부모들이 생각하기에 위탁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파악한 역할은 '위탁보호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친부모가 정과의 연계'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5와 .8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탁보호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는 ① 새로운 위탁부모의 개발, 교육, 양성 ② 새로운 위탁보호 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의 양성이 포함된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은 위탁부모들에 의해서 수행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체적인 위탁보호의 총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며, 아직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

라에서는 더 유의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직 위탁보호의 전달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위탁보호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위탁부모들이 인식하는 위탁기관의 역할 중 두 번째 요인은 친부모와의 연계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위탁부모들이 아동의 친부모와 직접 만나고, 의사소통하기 보다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중재해야 함을 의미한다.

위탁부모와 친부모의 관계 설정 및 제 3자에 의한 중재가 중요한 이유는 위탁아동들은 자신들이 위탁되었지만 여전히 친부모나 가족들에 애착을 느끼며 오히려 형제들과 같은 가정으로 위탁되기를 원하거나 지속적으로 친부모들과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며, 반대로 친부모들과의 잦은 접촉이 아동의 적응에 문제가 되거나 충성심갈등(loyalty conflict)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들이 있기 때문이다(Leathers, 2003; Whiting et. al., 2003).

다만 본 연구에서 위탁아동과 친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동과 친부모와의 관계를 조정 및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위탁부모들은 이것을 위탁부모의 역할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상의 역할들을 르프론은 위탁기관 역할과 관련하여 각각 '기관파트너요인', '친부모관련 요인'으로 명명한바 있다.

3. 위탁부모의 위탁유지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탁보호서비스의 수행에 있어 4주체는 아동, 위탁부모, 친부모, 위탁기관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각각의 특성이나 욕구, 동기, 역할 등에 따라 위탁보호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위탁부모에 초점을 맞추는 바이며 위탁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혼인상태, 위탁교육에 대한 부모교육의 만족도 등을 이들의 위탁유지 의사를 분석하는 독립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위탁부모들이 그들의 역할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위탁유지 의사는 달라진다고 하였으므로 위의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위탁부모의 역할인식 정도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다만 위에서 위탁기관

<표 4> 위탁부모들이 인식하는 위탁기관의 역할

		문 항	요인1	요인2	공통성
기관 역할 1 : 위탁 보호 활성 화 역할	문항16	협회를 위해서 새로운 수양가정 서비스를 계획한다.	.783		.429
	문항09	위탁아동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기록한다.	.714		.379
	문항36	다른 수양부모들을 위한 연수 교육이나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706		.781
	문항12	위탁아동들이 수양부모협회에 들어오는 과정과 위탁되어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639		.581
	문항29	사회복지사에 대한 불만사항들을 살펴보고 검토한다.	.620		.596
	문항20	위탁아동을 위한 특별한 활동에 쓰일 기금을 마련한다.	.580		.716
	문항10	수양부모들과 함께 일할 새로운 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	.567		.599
	문항39	새로운 수양부모를 양성한다.	.540		.571
	문항05	다른 사람이 수양부모가 될 수 있도록 모집하고 홍보한다.	.492		.552
	문항31	아이와 친부모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를 관리, 감독한다.	.389		.479
기관 역할 2: 친부 모와 연계	문항22	아이가 친부모와 만날 수 있게 일정을 잡아주거나 만남을 주선한다.		-.886	.730
	문항27	아이가 친형제들과 만날 수 있게 일정을 잡거나 만남을 주선한다.		-.812	.491
	문항13	위탁부모에게 수양부모 밑에서 적응해 가는 과정을 그들의 친부모에게 말해준다.		-.606	.418
	문항11	위탁아동들의 행동에 대해 그들의 친부모들과 상의한다.		-.584	.533
	문항08	친부모나 친척들을 아이가 방문하게 될 때 대려다 준다.		-.487	.460
신뢰도			.8534	.8065	
설명된 총 분산					49.39%

의 역할은 위탁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였으므로 이를 직접 분석모형에 투입하지는 않기로 하였다.

먼저 로지스틱회귀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와 그 측정방법은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앞의 <표 1>에서는 위탁부의 연령과 위탁모의 연령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는 이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위탁부와 위탁모의 연령 평균 및 교육연수 평균을 활용하였다. 위탁부와 위탁모의 연령 및 교육연수 등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며 혼인상태 변수의 경우 실제로는 총 5개의 범주로 측정하였으나 이 범주가 명목척도였던 관계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범주를 기준으로 하여 계부모 가족이 아닌 경우를 1로 하고 나머지를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모형에 투입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독립 변수간 상관관계가 특별히 높은 경우는 나타나지 않으며, 위탁유지의사와는 혼인상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적 유의도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연령과 혼인상태, 부모교육만족도, 경제적 수준 등이 위탁유지 의사와 부적인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적상관에 대해서는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한다. 이 외에 위탁에 대한 부모교육 만족도는 위탁부모의 두 가지 역할 인식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독립변수들이 위탁유지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 명	측정
독립변수	외적체계지원역할인식	13개 문항의 총점 /13
	내적체계지원역할인식	4개 문항의 총점 /4
	부모교육 만족도	만족=1, 불만족=0
위탁부모의 자원수준	위탁부모의 연령	위탁부와 위탁모 연령의 평균
	위탁부모의 교육 수준	위탁부와 위탁모 교육연수의 평균
	혼인 상태	-기혼 (전처나 전남편의 자녀 없음)=1 -기타=0
	경제적 수준	-가구소득을 50만원부터 500만원 이상까지 50만원 단위의 8개 범주로 측정한 후 구간의 중간 값(mid-point) 부여
종속변수	위탁유지의사	- 3년 이내에 새로운 아동을 위탁할 의사가 있음 = 1 - 3년 이내에 새로운 아동을 위탁할 의사가 없음 = 0

<표 6> 위탁유지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상관관계

구분	위탁유지 의사	외적체계 지원역할	내적체계 지원역할	위탁부모 연령	위탁부모 교육수준	혼인상태	부모교육 만족도	경제적수준
위탁유지의사	1							
외적체계지원역할인식	-.080	1						
내적체계지원역할인식	.099	.613(**)	1					
위탁부모연령	-.092	.074	-.009	1				
위탁부모교육수준	.036	-.010	.031	-.050	1			
혼인상태	-.241(*)	-.281(*)	-.173	.086	-.083	1		
부모교육만족도	-.230	.260(*)	.291(*)	.174	-.074	-.045	1	
경제적 수준	-.030	-.003	-.063	-.121	.193	.191	.054	1

p*<.05, p**<.01

<표 7> 위탁유지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 분		B	Std.Error.	Sig.	Exp(B) (Odd ratio)
역할 인식	외적체계지원에 대한 역할인식	-1.065	.555	.055	.345
	내적체계지원에 대한 역할인식	1.115	.530	.035*	3.051
	부모교육만족도	-2.067	.957	.031*	.127
위탁부모의 자산	위탁부모의 연령	.011	.054	.835	1.011
	위탁부모의 교육 수준	-.031	.170	.856	.970
	혼인 상태	-1.809	.783	.021*	.164
	경제적 수준	.000	.000	.496	1.000
상수		2.511	3.960	.526	12.315

모형적합도 : chi-square 15.226* (df=7) -2Log Likelihood 78.054

p*<.05, p**<.01

분석결과 아동의 내적체계에 대한 지원역할, 위탁보호에 대한 부모교육만족도, 혼인상태 등이 95% 신뢰수준에서 위탁유지 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개별 계수들이 갖는 부호에 따라 그 영향력을 해석하는 것인데 위탁부모가 아동의 내적 체계에 대한 지원 역할을 1단위 강하게 인식 할수록 위탁유지 의사은 2배가량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위탁부모의 자원특성을 중심으로 최종 위탁유지 의사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7>의 분석 결과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부모교육에 대해 만족할수록 위탁유지의사는 87%가량 감소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 분석결과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론적 배경에 의하면 위탁부모가 위탁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면 위탁유지가 힘들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은 실제로 위탁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위탁유지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①모집단에서 실제로 위탁교육에 대한 만족여부에 따라 위탁유지의사가 달라지지 않거나, ②아직 위탁보호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가 안정적이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성이 반영되어 위탁교육의 실효성이 낮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⁴⁾.

마지막으로 위탁부부의 혼인상태와 관련하여 전처나 전남편의 자녀가 없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되었으므로 분석결과 B값이 -1.809로 나타났다는 것은

계부모가족이 아닌 상태인 가정보다 이혼, 사별, 계부모가족 등인 경우가 더 위탁유지의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혼인상태를 주로 미혼의 위탁모, 결혼, 별거, 이혼, 사별 등으로 구분(Denby, et al., 1999; Rhodes, et. at., 2003)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를 길러본 경험이 있을 것'등으로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수양부모협회, 2004)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은 부부 관계이다. 그러나 전처나 전남편의 자녀가 없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를 통해 적절한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위탁부부의 혼인상태가 그들의 위탁동기 및 위탁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남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위탁부모의 혼인 상태 역시 χ^2 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선행연구에서 위탁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혼인상태변수가

구분	교육만족여부		전체
	불만족	만족	
재위탁의사	없음	2	24
	있음	12	33
전체	14	57	71

* 최소기대빈도는 5.13으로 0%, 유의화률은 .06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다만, 부모교육에 대해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한 14명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경우가 재위탁의사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로지스틱분석에서는 화률적으로 부모교육에 불만족할수록 재위탁의사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4) 실제로 위탁부모의 부모교육만족도와 위탁유지의사에 대한 상관을 파악하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특히 일반위탁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일반가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H위탁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은 실제로 120여 가정이었으나 실제로 설문지를 작성해 반송해준 경우는 71개 가정에 불과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위탁보호를 위한 지원제도가 미약하다는 점을 포함하여)에서 응답의 필요를 강하게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 밖에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40대 이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탁부모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며 사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몇 가지 통계학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위탁부모의 개인적 특성은 위탁보호에 있어 자원의 개념으로 파악되며, 일반위탁보호를 수행하는 부모들의 경우 평균 연령 40대, 동일연령대의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 도시가계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소득수준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위탁보호 현황과 관련하여 조사일 현재 평균 약 1.08명의 아동을 위탁하고 있었으며, 위탁부모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아동을 위탁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금까지 위탁한 총 아동수는 평균 2.32명이며 3명 이상을 위탁보호한 경우도 약 30%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론적 배경에서 위탁부모의 위탁유지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부모 교육과 관련해서는 전체의 약 80%가량이 위탁교육에 만족하고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부분이 부부로 구성되어 전처나 전남편의 자녀가 없는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탁부모들은 위탁보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 요인들 가운데 어떤 역할들을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역할들을 위탁기관의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념화를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탁부모들이 인식하는 부모역할은 '아동의 외적체계에 대한 지원역할'과 '아동의 내적체

계에 대한 지원역할'로 명명할 수 있었다. 이 중 '아동의 외적체계에 대한 지원역할'이란 위탁아동과 관련 있는 교사, 친구, 친부모, 의사, 상담가 등과의 중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아동이 외부 활동을 위해 습득해야 할 구체적인 기술을 교육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아동의 내적체계에 대한 지원역할'이란 아동의 정서적 성숙, 자존감 향상,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포함된다. 특히 이 부분은 위탁아동들이 친부모와의 관계에서 학대와 방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차원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 외에 이론적으로는 위탁보호의 전체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이지만 위탁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역할들을 위탁기관의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위탁보호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친부모와의 연계'가 포함된다. '위탁보호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이란 새로운 위탁부모를 개발하고 이를 교육, 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외에도 새로운 위탁보호 서비스 및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또한 '친부모와의 연계'란 아동이 친부모를 일정하게 만난다거나 아동의 성장과정에 대해 친부모에게 알리는 역할 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위탁부모의 향후 위탁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위탁부모가 아동의 내적체계에 대한 지원역할을 더 강하게 인식 할수록 위탁유지의사가 높아지며, 부모교육만족도와 혼인상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탁아동들이 친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경험했을 가능성으로 인해 행동과 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는 위탁부모들의 경우 위탁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 가운데 하나는 부모교육과 혼인상태변수의 상관과 회귀계수가 모두 부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있다. 이를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이론이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위탁유지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혼인상태 역시 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위탁유지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바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위탁부모는 정확히 어떤 일을 수행해야하고, 위탁기관은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것

처럼 각각의 역할이 모호한 상태에서는 최선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움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위탁부모의 자격조건만 명시하고 있을 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위탁보호기관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하며, 특히 위탁부모들을 위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부모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위탁부모들이 부모교육자체에는 만족하였으나 이것이 위탁유지 의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모교육에 만족했으나 위탁유지 의사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탁보호의 총량을 증가시키고, 한 번 위탁부모가 된 사람들이 유지(retention)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의 역할을 더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연구수행상의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한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안적인 방법으로 요인분석이 가능한 자료임을 밝히고 독립변수의 수와 사례수가 약 10:1이 비율로 나타나 다변량 분석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좀 더 많은 사례를 포함시켰더라면 역할 인식과 위탁아동의 수, 혹은 위탁기관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떻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보다 풍부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 접수일 : 2005년 11월 14일
- 심사일 : 2005년 12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2월 10일

【참고문헌】

- 김정우(2006). 일반위탁보호를 수행하는 부모의 특성과 역할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H 위탁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1), 발간예정.
- 김진숙·이근무(2005). 위탁아동의 양육계약해지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 강석후(2001). 가족의 구매의사결정에서 성별역할관념론과 자원이론에 대한 연구. *한국마케팅저널*, 3(1).
- 양심영(2003). 가정위탁서비스의 보호형태별 특성과 위탁아동의 적응에 관한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1(5).
- 한국수양부모협회(2004). 가정위탁지원법률제정을 위한 설명회 자료집. *한국수양부모 협회*.

- 허남순(2004). 친인척가정위탁과 일반가정위탁아동의 심리 사회적 특성 및 위탁가정의 서비스욕구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 아동복지학*, 18.
- 보건복지부통계연보, <http://www.mohw.go.kr/index.jsp>
- Baring-Gould, M., Essick, D., Kleinkauf, C. & Miller, M. (1983). *Why do foster homes close?*, 8, 49-63.
- Beehr, T. (1995). *Psychological stress in the workplace*. New York: Routledge.
- eehr... (1987). The themes of social-psychological stress in work organizations: From roles to goals. In A.W. Riley & S.J. Zaccro (Eds.). *Occupational stres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New York: Praeger, 71-101
- Brown, J. D., Sigvaldason, N. & Bednar, L. M.(2005). Foster parent perceptions of placement needs for children with a fetal alcohol spectrum disorder.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7, 309-327.
- Campbell, C. & Downs, S.(1987). The impact of economic incentives on foster parents. *Social service review*, 61, 599-609.
- Chamberlain, P., Moreland, S. & Reid, K.(1992). Enhanced services and stipends for foster parents: Effects on retention rates and outcomes for children. *Child Welfare*, 81, 387-401.
-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1995). *Standards of excellence for family foster care services*.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 Cox, M. E., Orme, J. G. & Rhodes, K. W.(2002). Willingness to Foster Special Needs Children and Foster Family Utiliz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4(5), 293-317
- Andreae, D.(1996). Systems theory and social work treatment, in social work treatment: interlocking theoretical approaches, by Francis J. Turner. *The Free Press*, 601-616.
- Denby R., Rindfleisch, N. & Bean, G.(1999). Predictors of foster parents' satisfaction and intent to continue to foster. *Child Abuse & Neglect*, 23(3), 287-303.
- Downs, S.(1986). Black foster parents and agencies: Results of an eight state surve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8, 201-218.
- Fees, B. S., Stockdale, D. F., Crase, S. J., Riggins-Casper,

- K., Yates, A. M., Lekies, K. S. & Gillis-Arnold, R.(1998). Satisfaction with foster parenting: Assesment one year after traini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0, 347-363.
- Friedman, R. M., Lardieri, S., Murphy.R. E., Quick, J. k. & Wolfe, D.(1980). The difficult job of recruiting foster parents. *Public Welfare*, 38, 10-17.
- General Accounting Office(1989). Foster parents: Recruiting and preservice training.
- Geoffrey Keppel(1991). Design and analysis: A researcher's handbook. UC, Berkeley.
- Gorsuch, R. L.(1983). *Factor analysi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Hesse-Biber, S. & Williamson, J.(1984). Resource theory and power in families: Life cycle considerations, *Family Process*, 23, 261-278.
- Heptinstall, E., K. Bhopal & J. Brannen(2001). Adjusting to a foster family: Children's perspectives. *Adoption & Fostering*, 25(4), 6-16.
- John G. Orme, Cheryl Buehler, Michael McSurdy, Kathryn W. Rhodes, Mary Ellen Cox, David Le Prohn, N. S.(1994). The role of kinship foster parents: A comparison of role conception between relative and non-relative foster par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6, 65-85.
- Kang H. A.(2003). *Caregiving Environments of Kinship Care Literature Review*. Children and family research center.
- Leathers. S. J.(2003). Parental visiting, conflicting allegiances,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mong foster children. *Family Relations*, 52, 53-63.
- Liane Vida Davis(1996). Role theory and social work treatment. by Francis J. Turner. Social work treatment: Interlocking theoretical approaches. The free press.
- Pasztor, E. M. & Wynne, S. F.(1995). *Foster parent retention and recruitment: The sate of the art in practice and policy*.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Pasztor, E. M.(1985). Permanency planning and foster parenting: Implications for recruitment, selection, training, and reten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7, 191-205.
- Pecora, P. J., Le Prohn, N. S. & Nasuti, J. J.(1999). Role perceptions of kinship and other foster parents in family foster care, in R. Hegar & M. Scannapieco (Eds.). *Kinship foster car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55-178.
- Rhodes. K. W., John G. Orme, Mary Ellen Cox, & Cheryl Budhler(2003). Foster family resources, psychosocial functioning, retention. *Social Work Research*, 27(3), 135-149.
- Simon, R. D. & Simon, D. K.(1982). The effect of foster parent selection and training on service delivery, *Child Welfare*, 61(8), 515-524.
- Testa, M. F. & Rolock, N.(1999). Professional foster care: A future worth pursuing?. *Child Welfare*, 78, 108-124.
- Whiting, J. B. & R. E. LeeIII.(2003). Voices from the system: A qualitative study of foster children's stories. *Family Relations*, 52, 288-295.